

의안번호	제 143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4월 일 (제 299 회)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1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
----------	-----

제출연월일 : 2011. 4.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함(안 제7절)

나. 다른 조례의 일괄 개정(안 부칙)

- 1)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등교육과, 산업정보평생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2.25. ~ 2011. 3.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평가결과 해당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8조제1호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등”으로 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등 교원의 직무연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전문계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한다.

②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 중 "영 제105조의3"을 "영 제91조의3"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43조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1]

특성화고등학교등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제26조 관련)

명 칭	설 치 학 교	위 치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7 절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 <u>동실습소</u>	제7절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 <u>동실습소</u>	제7절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 <u>동실습소</u>
제26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u>전문계고등학교</u>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 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u>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 동실습소</u> (이하 “공동실습소” 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설치)	① ----- ----- <u>특성화고등학교</u> 중 자 <u>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u> <u>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u> <u>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 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등학교등” 이라 한다)</u> ----- ----- ----- ----- -----	제26조(설치) ① ----- ----- <u>특성화고등학교</u> 중 자 <u>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u> <u>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u> <u>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 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등학교등” 이라 한다)</u> ----- ----- ----- ----- -----
②	<u>공동실습소</u>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u>공동실습소</u>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u>공동실습소</u>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8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 음 사항을 관장한다. 1. <u>전문계고등학교</u> 학생의 산업	제28조(업무)	----- ----- 1. <u>특성화고등학교등</u> -----	제28조(업무) ----- ----- 1. <u>특성화고등학교등</u> -----

<p>기계 공동실습교육</p> <p>2. <u>전문계 교원의 농업 또는 공업관련 특별연수</u></p> <p>3. (생략)</p>	<p>-----</p> <p>2. <u>특성화고등학교등 교원의 직무연수</u></p> <p>3. (현행과 같음)</p>
--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2조)]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전문계학교</u>의 실험실습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p> <p>4. ~ 5. (생략)</p>	<p>제4조(보조대상사업)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 실험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u>의 실험실습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p> <p>4. ~ 5.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 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 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 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 다. (생략) 라. 영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 6. (생략) 	<p>제2조(징수금액) ----- -----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 6. (현행과 같음)

<p>라 한다) 등을 말한다.</p>	<p>-----.</p>
<p>제43조(사용대상) 공동실습소는 전문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공동실습소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학생의 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43조(사용대상) -----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 ----- ----- ----- ----- -----.</p>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1)

< 현 행 >

[별표 1]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

명 칭	설 치 학 교	위 치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6

< 개정안 >

[별표 1]

특성화고등학교등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제26조 관련)

명 칭	설 치 학 교	위 치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6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25호, 2011. 1. 17.]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6.29]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1. ~ 4. 삭제 <2010.6.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 9. 삭제 <2010.6.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